**법인계약부속약정서(법인계약자용)**

에프엠피라이프㈜(이하“갑”이라 한다)와 법인계약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광고마케터 (이하”병”이라 한다)이 소개. 추천한 법인대표자의 C\_Plan정기보험 가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추가 부속약정서를 작성한다.

【추천 및 가입상품 내역】

|  |  |  |  |  |  |
| --- | --- | --- | --- | --- | --- |
| 보험사 | 상품명 | 계약자 | 피보험자 | 월납 보험료 | 청약번호 |
| 한화생명 | 간편가입  CEO정기보험 |  |  |  |  |

**제1조 【법인계약자의 CEO정기보험가입 사실확인】**

“을”은“갑”의 플렛폼에 상기 C\_Plan정기보험상품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전문가에게 상품설명 및 중도해지 환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청약서 등의 계약관련 서류에 직접 법인인감도장, 법인명판, 대표자의 자필 서명 등의 주요 의사표시를 진행하였으며 보험계약 체결 후 청약서부본, 상품 설명서, 약관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2조 【법인계약자의 보험계약 유지 및 미 유지 환수금의 연대보증】**

“을”은 “갑”에게 상기 내용으로 가입한 보험의 계속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소 36개월 이상으로 하며, 계속보험료 의무납부 기간 내 미납부로 인한 중도해지 및 실효 등의 사유로 발생한 당해계약의“병”의 환수금 중 잔여 미 환수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연대보증 책임지기로 하며, 이의 증표로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의 민원해지 및 무효로 인한 환수】**

“을”은 제2조와 동일하게 “을”이 가입한 보험의 민원해지, 무효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병”의 기 지급 광고수수료에 대한 잔여 미 환수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연대보증 책임지기로 합니다.

**제4 조 【”갑”의 광고수수료 성실 지급의무 등 】**

“갑”은 “병”에게 “을”의 매월 보험료의 납부와 연계하여 발생한 광고수수료를 성실하게 지급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만약 미이행시”갑”은 “병”에게 미지급금의 배수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갑”과 “을”과 “병”은 상기 부속약정 내용에 합의하고 동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약정서를 나누어 보관하기로 합니다.

“갑” “병”

상 호 : ㈜에프엠피라이프 마케터 성명 : ( ) 인

사업자번호 : 206-88-00950 주민번호 : ( - )

대표이사 : 박 익 수 (인) 주 소 : (

마케터연락처: (010)- ( ) – ( )

**을”(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연대보증인(법인대표): 자필서명 (서명)

대표이사 연락처 : (010)- ( ) – ( )